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2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안 제16조제3항제3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미애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6.

다. 회 부 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안 제16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 조달수수료의 감면 -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1.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달수수료의 감면 -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u>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 등</u>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조달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함)할 수 있는 사유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달청은 현행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1)에 따라 수요기관에게 공사 및 수요물자 계약 등 조달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조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6조제3항²⁾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제1호),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제3호)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호 및 제2호는 미리 대금을 지급 받거나 수요기관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체결 지연 등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며, 제3호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각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³⁾하고 있음.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수료)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국가의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재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의 조달수수료는 약 1,282만원임.

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의 조달수수료 현황]

(단위: 건, 원)

구 분	2022	2023	2024
조달계약건수	5	6	6
조달수수료 합계	6,043,080	11,085,140	12,815,600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물품분류번호: 80161598) 계약 중 사회복지시설 관련 위탁위탁서비스 추출

** 자료: 기획재정부(조달청 제출자료)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에
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혜택]

내용	관련 조항·지침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공과금 감면 전기료 20%, 가스료(산업용 단가), 상수도료(30%)	전기료(전기공급약관_신고대상인 사회복지시설) 가스료(지자체별 도시가스공급규정) 전화요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수도요금(「수도법」 제38조)
국세·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 수행을 위한 조달특별회계의 중요재원으로서 현행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조달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수수료 감면은 조달 서비스 제공, 공공조달의 역할 확대(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등을 고려하여 수입·비용 추계 분석을 통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도 조달특별회계의 전체 세입 3,948억원 중 조달수수료는 73.7%인 2,912억원이고, 조달수수료 감면 금액은 2023년 기준 159억원으로, 신속집행에 따른 감경(82.2억원, 51.6%), 대금 선납에 따른 감경(71.6억원, 44.9%)이 감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조달수수료 수입 추이(세입결산 기준)]

(단위: 억 원)

연 도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계약	비축물자	합계
2022	2,130	47	430	175	2,782
2023	2,268	44	454	146	2,912
2024	2,314	54	552	120	3,0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조달청 제출자료)

다만,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4)에 따라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그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데,

조달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21~2023년 평균 약 680억원 정도이고, 2024년은 2,195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는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4)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1	2022	2023	2024
일반회계 전출금	95,850	61,597	47,357	219,491

자료: 조달청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효과와 조달특별회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여유재원인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및 감면으로 인한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재원 감소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수수료) ① . ② (생략)	제16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 등-----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60